

국제크루즈산업연구소 규정

제정 2013. 7. 1. 개정 2017. 5. 23.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부설 국제크루즈산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크루즈산업분야를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3조(위치)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크루즈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정책과 제도 연구
2. 크루즈산업분석 및 경영, 기술정보 지원
3. 크루즈 산·학·연 협력 및 교류활동 지원
4.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5. 크루즈관련 자료수집, 세미나, 국내·외 학술대회, 초청강연, 공개강좌 등 개최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5조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사무직원과 조교) ① 연구소에 사무직원과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예산) 연구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예산총계주의) 연구소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 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회계) 연구소 회계업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회계처리하는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크루즈전문인력양성센터) ① 연구소의 목적달성과 사업 지원을 위한 크루즈전문인력양성센터를 둔다.

② 센터장은 소장이 겸직한다.

[본조 신설 <2017.5.23.>]

[중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<2017.5.23.>]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10조에서 이동 <2017.5.23.>]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